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6일 안상훈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8.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8. 19.)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8.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안상훈 의원)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설립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

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은 기존에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 아동 지원업무가 별개의 기관에 위탁되어 산발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공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었음.

그러나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던 민간 기관 및 단체들과 유사한 기관 중 하나로 인식되는 등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아동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외에 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아동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동 지원 예산의 안정성과 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경윤)

그간 아동학대 관련 업무, 입양 관련한 업무는 민간 기관들이 주로 수행하여 왔고,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상담 업무도 민간 단체에서 담당하는 비중이 상당하였던바, 아동권리보장원도 국가가 설립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보다는 다양한 아동복지 관련 사업 수행의 한 주체로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고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최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2023. 10. 31. 제정, 2024. 7. 19. 시행)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아동의 출생 증서 영구보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5. 7. 19.)으로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과 국제입양 관리 권한을 부여받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 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대외적인 신뢰도도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유사 단체 명칭에는 ‘한국’을 사용하고 있음.

다음,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비용 지원의 구체화와 관련된 것으로, 현행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5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용 지원을 보조금으로 하는지, 출연금으로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바,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이후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명시화함과 아울러, 출연금 형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한국한의약진흥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 등의 경우 개정안과 같이 보조금 또는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함.

####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